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주]지금융코리아
Good Financial Korea Co., Ltd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 목 차 -

제 1 장 총칙	4
제 2 장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5
제 3 장 보험설계사 준수규정	9
제 4 장 수수료 규정.....	12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14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14
3. 업무 관련 서약.....	15
4. 윤리준법 서약.....	16
5. 정보보호 서약.....	17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18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19
8.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21
9. 모집경력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24
10.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26
11. 지급확약서	27
12. 연대보증서	28
13.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내.....	29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구분	회 사 명	(주)지금융코리아		
인적 사항	부 문 명		지 점 명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휴 대 폰		자택전화	
	자택주소			
계좌 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도입 사항	도 입 자		직 위	
	사 번		연 락 처	

아래의 서류를 각 1통씩 첨부하여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위촉을 신청합니다.

- ✓ 위촉계약서, 서약서, 사진 1매, 보험연수원 교육수료증, 합격증(신인인 경우)
-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초본(3월이내, 주민번호공개용),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e클린보험서비스상의 조회 결과서
- ✓ 금융사고 경력조회서(전소속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 재정보증서류 (보증보험증권 등)

※ 본 개인정보는 ㈜지금융코리아 보험설계사 등록 및 위촉업무에만 사용됩니다.

(업무담당자는 첨부서류들을 반드시 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 1 장 총 칙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등록번호:110111-7427829/보험대리점등록번호:2020050003] (이하 "회사") 과 _____(이하"보험설계사") 은(는)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함에 있어 설계사의 신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경력조회서, 서약서, 조회동의서로 구성된다.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 ① 총칙 ②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③ 보험설계사 준수규정 ④ 수수료규정
- 2.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e클린보험서비스상의 조회 결과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 84 조 제 5 의 2 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9-4 조의 2 근거)
- 3. 금융사고 경력조회 서식(전소속사 경력증명서(상별사항포함) 또는 설계사 및 관리자 확인서
- 4. 서약서
 - ①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 ② 완전판매 이행 서약
 - ③ 업무관련 서약
 - ④ 윤리준법 서약
 - ⑤ 정보보호 서약
 - ⑥ 불건전영업행위근절 서약

제 3 조 (용어)

본 계약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으며, 전 계약서에 적용된다.

1. 위촉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행위로서 회사와 제휴한 보험회사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회사로부터 위임받는 행위를 말한다.

2. 해촉

회사와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로서 위임한 업무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 내용의 편입)

보험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설계사수수료지급규정", "준법관련규정", "유지율관리기준", "업무지침",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각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1 년으로 하며 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 년씩 연장된다.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1.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설계사수수료지급규정",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기준을 포함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신설, 폐지할 수 있으며, 사내전산공지 또는 서면통지로서 보험설계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보험설계사는 변경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설계사수수료지급규정",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기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 내용에 대해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생략한다.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약정서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7 조 (위촉계약의 시점)

본 위촉계약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설계사등록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보험연수원 모집종사자 등록 교육을 이수한 후 회사에 등록하며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제 2 장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제 8 조 (신분 및 고용관계의 부인)

1. 보험설계사는 제 2 장 제 9 조 위탁업무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로 독립사업자로서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서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3.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소득세 납세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소득세법 제 144 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 확정 신고만을 한다.

4. 회사와 위촉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부문책임자 단독으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러한 직원이나 사람들은 회사에 의해 위촉되거나 고용된 것이 아니며, 또한 회사를 대신하여 지점장에 의해 위촉되거나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위촉하거나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지점장 또는 부문 책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지점장 또는 부문 책임자에 의해 위촉되거나 고용된 사람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점장 또는 부문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탁업무)

회사는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으로 인해 그 업무를 위탁하며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보험업법에 따라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등록되고 회사의 각 제휴 보험회사와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1. 회사와 제휴 된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
2. 회사의 합법적 영업행위에 관련된 홍보행위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위 각 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6. 상기 업무 이외 보험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 10 조 (위촉요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보험 설계사 등록자격 시험”에 합격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보험연수원의 모집 종사자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보험업법에 의거 회사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필 한 자
2. 제 2 장의 위촉규정 제 11 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보험설계사 자격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11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이후에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위촉계약 제 20 조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회사에 알린 사항이(제출서류) 허위 사실로 판명된 자
 12. 과거에 모집에 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3.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사고설계사로 확인이 된 경우 (단, 특인 건은 제외)
 15. 금융사고 경력조회 결과 사고자로 판명이 된 경우
- 가. 경력조회 방법은 1. 전소속사 경력증명서(상벌사항포함) 2.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확인서 3. 관리자확인서 중 1 가지 이상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구비서류)

보험설계사는 위촉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촉계약서 및 서약서 (회사보관용)
2. 가족관계등록부(3 월이내, 주민번호공개용)
3. 주민등록초본(3 월이내, 주민번호공개용)
4. 경력증명서(최종 경력기간이 1 년 미만 시 직전 회사 포함 1 통) 및 금융사고 경력조회결과서
5.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및 e클린보험서비스상의 조회 결과서
6. 재정보증 서류 (보증보험 증권,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7.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8. 위 서류는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9. 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계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위탁업무의 일시 중지)

1.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출산,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위탁업무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불의의 중대한 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2. 위탁업무의 일시 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한 제 규정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소속변경)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대하여 소속기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소속기관의 폐쇄, 통합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5 조(해촉 및 위촉 업무의 제한)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하거나 위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촉 되는 경우에는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 위촉 업무 제한 기간 동안에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① 보험설계사가 사망한 경우
- ② 보험업법 및 회사 내규상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위촉계약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모집자 보고서 등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신원조회 및 신용조회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⑤ 기타 불성실한 업무 태도,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⑥ 보험설계사가 일으킨 영업 관련 사고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소송 및 민원분쟁을 유발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⑦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의 실효, 해지, 해약, 취소, 철회, 품보, 민원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월별 총 수수료 환수금액이 총 유지수수료 금액보다 많은 경우로 2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⑧ 보험설계사 본인의 재정보증,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교체, 재정보증인 추가 입보, 이행 보증보험 등 재정보증 담보의 증액, 재정보증 관련 서류구비 등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 ⑨ 위촉계약 최저 유지실적 (회사가 일정기간 평가한 실적)이 저조하여 회사의 판단 하에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직전 3 개월 이상 무실적 미 가동자
 - 2) 직전 3 개월 합산 신계약 총소득(세전소득, 제시상금 등 포함) 50 만원 미만자
- ⑩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부한 경우
- ⑪ 제 18 조(준수사항 및 이행의무)위반, 기타 위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 16 조 (계약해지)

1. 보험설계사는 언제든지 위촉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청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해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 일 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 또는 본 계약서 제 15 조(해촉 및 위촉 업무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7 조(계약 종료 시 의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서류, 금전, 자산설비, 사무 집기, 보험안내자료 등을 즉시 회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자는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험설계사 준수 규정

제 18 조 (준수사항 및 이행의무)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상호협정 및 회사의 관련 규정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고객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는 당사자(회사포함)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한 보험안내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언론사를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모집 시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5. 위탁업무 처리와 무관한 목적으로 설계사로서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부당하게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보험안내자료, 영수증 기타서류는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험료를 수령한 때에는 반드시 제휴보험사 소정의 영수증을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령한 보험료는 지체 없이 제휴보험사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9. 개명, 기타 신분상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보험료의 환불 및 기타 유인을 허락하거나 제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없다.
12. 보험설계사는 보수교육 및 부실모집인 관련 교육에 해당된 경우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13.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실제 고객정보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3대 기본 지키기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청약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자필서명 수령
- 약관 및 청약서의 중요내용 설명
- 약관 및 청약서 부분(상품설명서 포함)의 전달

15.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금융사고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의 금전(보험료,보험금,대출금,해지 또는 만기환급금, 제지급금, 각종경비 및 제지원비 등)을 유용·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 등 포함)하는 행위
- 계약관계자 및 거래선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하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
-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 투자자금 모집행위(유사수신행위)
- 계약자 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수수료 편취 행위
- 사적 금전대차 행위(보험계약과 연관된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함)
-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16. 제 18 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위촉계약서 제 19 조 배상 책임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제재할 수 있다.

제 19 조(배상책임 및 제재)

1. 회사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위험 선택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인지한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고지 받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회사로 과태료, 과징금, 제재금 등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회사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법률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의 규정 및 지침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③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 ④ 기타 위촉 계약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보험설계사가 완전판매 등 회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위촉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0 조(재정 보증)

1.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금이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조건의 재정보증인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수당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견질용 약속어음 및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의 담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견질용 약속어음은 회사가 선지급한 보험모집 수수료 등이 실효, 해약, 해지, 품질보증, 고객민원에 의한 해지, 기타 보험회사 또는 회사 내규 등에 의한 수수료 반환사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선지급수당 반환채무 발생시, 미 반환된 경우 지급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증하여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① 견질용 약속어음에 대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제공시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병행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회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또는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 본인 또는 보증인의 지방세 납입증명서
- 3) 보증인 연대보증서

4.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위 1 부터 3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보증보험의 효력이 중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위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수수료지급, 보험모집이나 수금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반환채무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해촉 되어도 이행보증 가산기간은 유지된다.

6. 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 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 (위험준비예치금)

위험준비예치금 이란 2021.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거액의 과태료, 과징금, 환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모든 설계사에게 매월 발생하는 개인별 수수료 명세표 상의 과세소득 합계(시책금 제외)인 세전 수수료의 5% 금액을 세후 수수료 에서 위험준비예치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위험준비예치금은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약을 체결한 설계사 에게 적용된다.

2. 위험준비예치금의 산출

① 위험준비예치금의 예치율은 5%이며,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험준비예치금=해당월 수수료 산출 금액의 합계(세전)X 예치율 5%

② 위험준비예치금 산출시 시책금은 제외한다.

③ 매월 수수료 지급시 위험준비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전 수수료에서 산출하고,, 예치금 반환기준에 따라 예치금 반환시 예치금 원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위험준비예치금은 매월 수수료 지급시 예치하며, 예치기간은 5년(60개월)으로 한다.

4. 위험준비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치기간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를 합산 지급한다.

① 최초 예치 개시월로부터 60 개월 경과된 예치금을, 61 개월 도래시 수수료지급일에 예치금 원금에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② FC 해촉 시 회사는 해촉된 설계사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5년(60개월)이 경과된 월의 수수료 지급일에 위험준비에치금 및 이자를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되, 해촉된 설계사가 반환채무 및 손해배상 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를 작성/제출 완료시 지급하며, 수수료 환수 등 채무 불이행 설계사에 대하여는 위험준비에치금 원금 및 이자에서 환수금 등을 우선 상계한다. 단, 해촉후 1년 이내에 재 위촉 하는 경우 해촉전 예치된 위험준비에치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
5. 위험준비에치금은 최초 예치월로부터 60개월 경과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달 수수료 지급일에 61회차 도래 예치금 및 산출 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6. 각 예치기간별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단리 1%를 적용하며, 예치금의 이자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제 129조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7. 회사는 매월 예치금 현황을 조회 가능토록 사내 전산망을 제공한다.
8. 위험준비에치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 위험준비에치금 제도를 적용한다.

제 22 조(조세 관련 책임)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보험설계사가 부담한다.

제 23 조(보험설계사 고충처리)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고충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 협회 등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제 24 조(법률 개정내용 반영)

회사 및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이 우선 적용됨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 25 조(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 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촉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제 26 조 (감사)

1. 지점장 또는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정기 또는 수시로 시행하는 업무 감사 또는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2. 지점장 또는 보험설계사는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는 업무 감사 또는 업무지도 시 회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교육)

설계사에 대하여 위촉 후 필요에 따라 연수 및 교육을 한다.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설계사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련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수료 규정

제 28 조 (수수료)

1. 설계사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설계사 수수료 제규정(FC 수수료규정)"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시책금, 제지급금을 말하며 이하 '수수료'라 한다.
3. 수수료는 보험설계사 위촉기간 중에만 지급되며 해촉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29 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 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 ③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처리 되거나 청약 철회된 경우
 - ④ 기간 또는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 상실한 경우
 - ⑤ 기타 보험회사 또는 회사의 내규 등에 의한 수수료 반환사유 발생 시
2. 상기 1 항의 수수료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 할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미 반환 수수료를 우선 공제하여 환수할 수 있다.
3. 상기 각 호의 수수료 환수 발생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선지급 수수료 반환채무 반환을 위해 재정보증 담보에 대한 강제집행 (이행보증보험,부동산근저당권설정 등) 또는 추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 30 조 (수수료 환수 기준)

1. 보험 모집으로 인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가 정상 입금되어 유지됨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수수료 이므로 보험계약 실효, 해약, 청약철회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미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 단 보험계약이 품질보증, 민원해지 등의

무효처리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한다.

2. 수수료 환수 세부 기준에 관하여는 회사 "설계사 수수료 제규정(FC 수수료규정)"을 따른다.

제 31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본사, 부문)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2 조(효력 발생일)

본 계약은 계약체결 후 회사가 계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위촉계약을 이 계약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을 경우의 효력 발생일은 기존 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33 조(기타사항)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련 법규와 회사에서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意的 의사표시로 자필서명 합니다.

20 년 월 일

■ 보험설계사

주민등록번호	_____ - * * * * *
보험설계사	☐ 설명을 잘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 _____ (서명)
	☐ 위촉계약서 부분을 수령 하였습니다.보험설계사 : _____ (서명)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서약서

부 문 : _____ 지 점 : _____

주민번호 : _____ - * * * * *

성 명 : _____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1)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활동을 하면서 보험업이 해당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정준수는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행위도 하지 않고 모집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 위 서약에 대해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제재 수단에 의한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에서 강조하는 완전판매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완전판매에 대한 필요성과 불완전판매행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며 아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모집/관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고지의무 확인서, 상품설명서, 적합성 확인서, 신용정보동의서, 배서승인신청서 등 제반 계약 관련 서류에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은 후 청약서 부분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겠습니다.

2) 본인은 약관 및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3) 본인은 계약체결 업무 시 회사의 인수지침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수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영수한 보험료를 지연 입금하는 등 본인의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직업, E-Mail 등 고객정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본인은 상기 사항을 포함한 완전판매를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보험계약자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의 잘못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 등이 지급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부과된 제재 및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3. 업무 관련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 위축을 취소하였을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① 회사의 제반 보험영업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지점장의 영업정책이나 권고 또는 경고에 불응하여 임의로 행동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③ 보험모집질서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④ 회사의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다른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 또는 유인하려는 일체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특히, 아래의 정보자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회사의 정보자산(계약정보, 고객정보, 조직정보, 수수료자료, 교육자료, 사내전산망 접속계정, 회사로고 및 CI, 홈페이지 등 온라인 게시물, 마케팅자료 등 일체의 정보자산)은 회사 업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② 회사의 일체의 정보자산은 업무 외적인 용도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③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 점검 조치 등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④ 전산장비의 외부 반·출입은 회사의 통제 절차를 준수하면,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4. 윤리준법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직원으로서 보험 관련 법규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윤리규범 실천을 생활화하며,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과 업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2) 본인은 임직원 상호 간에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성실히 대하겠습니다.
- 3) 본인은 업무상 인지한 정보나 회사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사외에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4) 본인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5) 본인은 고객들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6) 본인은 회사의 유형재산(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7)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8) 본인은 임직원 윤리규범 및 업무지침과 관련된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 및 임직원 등 개인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배상 및 처벌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5. 정보보호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에(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보안이 필요한 업무수행 방법, 영업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의 사용금지, 외부로의 자료유출금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 합니다.

- ① 고객정보: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 차량번호 등
- ② 계약정보: 보험회사,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자, 보험료, 계약상태 등
- ③ 조직정보: 설계사명, 설계사소속, 설계사연락처 등
- ④ 영업정보: 고객제안서, 회사제작 영업관련 각종PT 자료, 교육자료, 영업제규정, 수수료규정 등

2) 회사정보 및 고객정보의 사용범위

회사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해 지점관리 및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에만 사용하며, 위의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본 서약서에 제시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 고객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교육이수

일체의 고객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한 거래목적 및 계약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고객정보에 대해 철저한 정보보호 및 보안의무를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유출 금지 및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연 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4) 제3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만일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고객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가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와의 위촉관계 또는 사업존속관계가 중지될 경우,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회사에 반환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문서는 모두 반납 또는 폐기처분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손해배상책임

위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과 관련해 모든 법규 및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하고 관련 법규 및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투명한 영업문화 조성에 앞장 서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1) 보험모집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규정 및 기타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멀리 배척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특히 아래의 항목은 철저히 배척하겠습니다.

① **“경유처리”** : 보험업법 제 97 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② **“무자격 모집”** : 보험업법 제 83 조 1 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개하게 하고 그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소개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매집”** : 보험업법 제 99 조 에서 금지하는 다른 모집 조직 또는 특정인에게 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④ **“승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 97 조 에서 금지하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업법 제 98 조 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특별이익 제공을 조건(보험료 대납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⑥ **“작성계약”, “유사수신”, “사칭행위”** 기타 보험업법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점검 및 검사, 민원조사시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응행위는 본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응할 것이며 적발된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의 일원으로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완전판매를 통해 회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 행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회사의 교육, 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 3)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금융소비자보호 고지의무 확인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철저히 징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 4) 본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로 과태료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의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3. 업무 관련 서약
4. 윤리준법 서약
5. 정보보호 서약
6.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7.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자필서명 합니다.

☐ 보험설계사

☐ 상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했습니다	보험설계사 : _____ (서명)
---	--------------------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날인)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자)귀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설계사(대리점) 위촉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및 모집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및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및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험설계사(대리점) 자격 적부 판단 및 유지.관리 및 해촉 후 자격 적부판단 등
- 보험계약체결 및 보유계약유지.관리 및 내부통제 감사 및 관리를 위한 일체의 부수 업무 수행
-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수행
-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위탁 업무 수행
- 보험설계사(대리점) 위촉계약상 의무이행, 동의자의 환수 담보 제공을 위한 연대보증필요에 따른 업무수행

□ 회사가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제공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모집정보 (총 계약건수중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해지건수, 수당환수내역유무, 보증보험가입 및 청구여부)
- 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 및 보증채무현황, 수수료계좌내역, 신용카드 이용정보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재직 및 퇴직사실 등)
- 공공정보,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 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일 이후 5년까지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을 위한 교육 입과,보험협회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서울보증보험(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 고유식별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손,생보사별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기간 및 이동횟수, 보험업법관련금융사고정보, 손해,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위반 관련정보
- 모집정보 (총계약건수중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건수, 수당환수 내역유무, 보증보험가입 및 청구여부)
- 다른보험회사 또는 생.손보험회가입유한정보 (보험사기등관련법규위반사실여부, 금융사고정보, 손보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위반 관련정보, 보험사별설계사(대리점)등록기간 및 이동횟수, 총계약건수중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건수, 수당환수내용유무, 보증보험가입 및 청구여부)

□조회대상기관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연수원,보험개발원,서울보증보험(주),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등)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부로(주)등)

□개인(신용)정보조회목적

-상거래관계의설정,유지여부판단,신용능력통계모형개발및분석,기타신용정보조회가필요한상담등위촉계약및보험계약체결여부

를판단하기위한기초자료

- 이적시 위촉계약 체결여부를 판단 및 이와 관련한 금융위 등의 신고
- 위촉계약상의 권리의무 이행 (민원 및 법률분쟁대응, 수수료정산등)
- 손해,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준수를 위한 관련 의무 이행

□ 조회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일 이후 5년까지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을 위한 교육 입과,보험협회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설계사(대리점)위촉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및모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및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모집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등), 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귀사가 업무를 위탁한 자(채권관리, 신용정보회사, 우편물제작 및 배달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자)

-수수료환수담보를 위한 서울보증보험㈜

-모집정보 집적 및 활용을 위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손해보험회사

-위/해측 여부 확인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수수료 지급 및 예/적금 근질권 설정을 위한 시중은행 및 제2금융기관

-이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관계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계약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채권추심업무포함)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 위촉계약체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손해,생명보험협회 : 손해,생명보험회사가 위촉계약체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정보 제공, 모집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한 관리 및 조회

-손해보험회사 : 단체보험가입, 유지관리 및 보험금 청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설계사(대리점)위/해측유무,산재보험 대상신고/말소

-시중은행 및 제2금융기관 : 설계사(대리점)제수수료 지급, 예/적금 근질권담보 설정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등)

-신용거래정보(개인대출 및 보증채무현황, 신용카드, 계좌거래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 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위촉 및 해측사실 등)

-공공정보, 채무불이행 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조회정보(신용정보조회기록,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등)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 정보

-모집정보(총 계약건수,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건수, 수당환수내역유무, 보증보험가입 및 청구여부)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서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일 이후 5년까지

단,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중 모집정보는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등록일로부터 등록말소일 이후 3년까지

(2) 법률상 업무수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포함),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재보험사, 공제사업자, 계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는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기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위촉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및 해촉후 자격 적부 판단등

-당사 및 제휴사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포인트 제공등 고객에 대한 편의 및 서비스 제공등

-보험모집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

-위촉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자료제공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등), 모집실적과 그와 관련한 정보, 모집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일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일 이후 5년까지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을 위한 교육 입과,보험협회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귀사가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민감정보를 상기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을 위한 교육 입과,보험협회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상기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대리점)위촉을 위한 교육 입과,보험협회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 동의자

주민번호 : _____ - * * * * *	보험설계사 : _____ (서명)
--------------------------	--------------------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날인)



모집경력 수집 ·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지금융코리아 보험대리점 귀중

귀하는 아래의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모집경력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모집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모집경력 수집·이용 목적

-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여부 판단 모집경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 3자 제공

■ 수집 이용하는 모집정보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3년 및 장래발생할 ①부터⑩까지의모집경력

- ①개인식별정보(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②보험업계고유번호,③보험회사보험대리점 소속별,보험 설계사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의1(보험영업및보험금지급관련비교.공시항목별산출기준)에따른품질보증 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청약철회건수,불완전판매율⑥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제26호의산출 기준에따른13회차/25회차계약유지율산출을위한기초자료⑦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2제9호에따른우수 보험설계사해당여부 ⑧보험업감독규정제4~5조에따른집합.보수교육대상및이수여부 ⑨보험업법에따라영업정지,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을받은이력,수당환수내용 ⑩보증보험가입및청구유무

■ 모집경력의 보유 이용기간.

- 미위촉자 : 위촉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 위 촉 자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 후 3년 까지

2. 모집경력 조회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모집경력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조회할 모집경력의 내용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3년 및 장래발생할 ①부터⑩까지의모집경력

- ①개인식별정보(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②보험업계고유번호,③보험회사보험대리점 소속별,보험 설계사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의1(보험영업및보험금지급관련비교.공시항목별산출기준)에따른품질보증 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청약철회건수,불완전판매율⑥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제26호의산출 기준에따른13회차/25회차계약유지율산출을위한기초자료⑦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2제9호에따른우수 보험설계사해당여부 ⑧보험업감독규정제4~5조에따른집합.보수교육대상및이수여부 ⑨보험업법에따라영업정지,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을받은이력,수당환수내용 ⑩보증보험가입및청구유무

■ 모집경력 조회목적 :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여부 판단 및 모집경력의 체계적 관리

■ **조회자의 모집경력의 조회·보유·이용기간.**

- 미위촉자 : 위촉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 위 촉 자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 후 3년 까지

3. 모집경력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모집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 :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보험연수원,보험소비자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의 상호및제공하는모집경력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동의는보험협회,보험회사,보험대리점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보험연수원,보험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한동의를모두포함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 위촉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경력 수 집 관 리 제 공.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 위촉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모집경력의 체계적 관리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제공
-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감독규정제7~45조에따른보험계약청약서상모집중사자의 불완전판매율산출및기재
- 보험연수원:집합보수교육대상및교육이수여부정보관리제공
- 보험소비자: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설계사대리점에대한경력정보조회및확인

■ **제공할 모집경력**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3년 및 장래발생할 ①부터⑩까지의모집경력

- ①개인식별정보(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②보험업계고유번호,③보험회사보험대리점 소속별 ,보험 설계사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의 1(보험영업및보험금지금관련비교 .공시항목별산출기준)에따른품질보증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 청약철회건수,불완전판매율⑥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제26호의산출기준에따른13회차/25회차계약유 지율산출을위한기초자료⑦보험업감독규정제9~4조의2제9호에따른우수보험설계사해당여부
- ⑧보험업감독규정제4~5조에따른집합.보수교육대상및이수여부
- ⑨보험업법에따라영업정지,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을받은이력,수당환수내용
- ⑩보증보험가입및청구유무

■ **제공받는 자의 모집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후 3년 까지

20 년 월 일

회사명 또는 대리점명	(주)지금융코리아	휴대전화번호	
대리점 등록번호	제 2020050003 호	자택주소	
생 년 월 일		전자우편주소	
보험업계 고유번호		성명	(서명)

* 상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소 속 : 부문/본부 지점
주민번호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지금융코리아 (이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 합니다.

----- 아 래 -----

1. 회사의 규정에 의거한 수수료 반환 및 이행(지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합니다.
2. 계약체결 후, 실적변동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가입금액 조정요청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의 환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회사의 환수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할 것을 동의 합니다.
4. 서면 동의와는 별도로 공인인증을 통한 서울보증보험 사이버지점을 통한 가입절차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였으며, 이후 청약진행(전자서명)과정을 수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주)지금융코리아 귀중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채무)

- 27 / 29 -

연 대 보 증 서

(연대보증인 입보시 작성)

채 권 자 : (주)지금융코리아 (110111-7427829)

채 무 자 : / 주민번호:

(보험설계사)

연대보증인 : / 주민번호:

연대보증인은 채무자(보험설계사)가 채권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받게되는 보험모집 수수료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한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사유 발생시 채무자(보험설계사)가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다음의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1. 피보증 채무의 범위는 채무자(보험설계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지원금반환채무·대여금반환채무·기타의 약정서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의 부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범위로 한다.

2. 보증한도 (이자·기타의 지연배상금·기타의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는
금 _____ 원 으로 한다.

3.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며, 연대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간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를 받기로 한다.

4.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행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 할 수 있기로 한다.

■ 연대보증인 자필작성 및 서명

☐ 설명을 잘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 _____ (서명)
--	--------------------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인감)

(주)지금융코리아 귀중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안내

● 이행보증보험 가입절차 안내

- 1)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접속
- 2) 홈페이지 상단 '각종동의' 클릭.
- 사번이 부여된 경우: '단체청약용 조회동의' ➡ '보험수당용조회동의'
- 사번이 미 부여된 경우: '조회동의' ➡ '계약체결 필수동의'

※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등)기기로 동의업무 가능. 휴대폰으로 m.sgic.co.kr 접속 또는
플레이스토퍼/앱스토어에서 SGI 서울보증 검색후 앱 설치

[절차요약]

조회동의 ➡ 조회동의 결과조회(신청익일) ➡ 가입가능자 청약진행(전자서명) ➡
보험료납부(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증권발행 ➡ 회사로 증권제출
(계약기간: 1년 / 가입기간: 2년)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 안내

● 견질용 약속어음 등 재정보증시 구비서류

- 1)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발행 3개월 이내)
- 2) 연대보증인 있는 경우, 보증인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발행 3개월 이내)
- 3) 공증서식 또는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위임인 란)
- 4) 담보력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5) 연대보증인 입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및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등 담보제공

-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병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은 담보력이 있어야 함.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합산 금액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불가)